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의 주체 등 세부 내용 규정(안 제2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

※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해당없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5(교육명령) 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u>교육부장관</u> 에게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조의5(교육명령) ①----- ----- ----- ----- ----- ----- <u>교육감</u> ----- -----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u>교육부장관</u> 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	② ----- <u>교육감</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u>교육부장관</u> 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 ----- ----- ----- ----- <u>교육감</u> ----- -----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u>교육부장관</u>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⑤ ----- ----- ----- --- <u>교육감</u> ----- ----- ----- 1. ~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연락처	044-203-6444